

의안 번호	2402	[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3. 31.(월)
- 제출자 : 홍영진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3. 31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4. 15.(화)

2. 제안이유

-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들의 청결과 위생을 관리·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르신 품위유지비(목욕 및 이·미용비)를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자(안 제3조)
- 지원신청 및 결정(안 제4조)
- 지급방법, 지급중지 및 환수(안 제5조, 제6조)
- 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- 지원대상자 사후관리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26조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2조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- 최근 5년간 우리구 총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,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24. 12월 기준 20.3%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
- 이러한 상황은 우리구가 노인복지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기해 줌
- 본 조례안은 우리구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(목욕 및 이·미용비)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거법규

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의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·요양 제도등을 확립·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사회보장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